

정부, 기업양돈장 돼지 사육 규제 강화키로

금년부터 대규모 양돈업체 돈육수출 의무화

양돈업 허가지침 개정·고시

정부는 구립 24일 중소규모 양돈농가의 소득원을 확충하고 사육규모에 상응하는 역할분담으로 양돈업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양돈업체에 대해 돼지고기 수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돈업 허가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정부는 양돈업 허가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금지키로 하고 ▷ 종돈업 등록을 한 업체, 종돈 500두 이상 사육하는 업체 ▷ 양돈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종돈업과 양돈업을 함께 하는 업체중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사육하는 업체에게는 수출의무량을 부과키로 했다.

수출 의무량 부과 기준은 모돈의 경우 전체 허가 받은 두수 또는 등록된 두수에 대해 두당 200kg씩 부과했으며, 종돈의 경우엔 전체 종반 돈 보유두수에 대해 두당 100kg씩 수출토록 했다.

이들 업체중 종돈 또는 모돈을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업체는 금년 3월 1일부터 89년 2월 28 일까지 수출의무량의 50%를,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업체는 89년 3월 1일부터는 매년 수출의무량의 100%를 반드시 수출토록 했다. 또 종돈 또는 모돈을 500두 이

상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업체는 금년 6월 1일부터 89년 5월 31일까지 수출의무량의 50%를,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1,0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업체는 89년 6월 1일부터 매년 수출의무량의 100%를 반드시 수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수출의무량이 부과된 업체는 수출 의무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출 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토록 했는데, 수출의무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장 확인을 제출해야 하고, 수출의무자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엔 ▷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면장 ▷ 외화획득용 원료(수출물품) 수매승인서 ▷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 농장별 규격돈 구매 및 수출물량 확인서 ▷ 세금계산서 ▷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돈육 수출의무업체가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출 실적이 의무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주어 감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한 후에도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돈업 등록·허가

및 종돈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양돈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허가받은 두수를 초과하여 모돈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으나, 허가당시 허가 상한선인 1,000 두를 초과하여 모돈을 사육한 경우에는 초과모돈 두당 연간 13두의 자돈을 계열농가에 공급하였거나 200kg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당시의 두수 한도까지 모돈 사육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동일인 명의로 지역을 달리하여 양돈장을 분산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양돈업·종돈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의무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종돈업의 경우 납세증명 등 증빙자료에 의해 종돈의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실적 확인시 수출의무량에서 종돈으로 판매된 물량만큼 빼주기로 했다.

양돈업 허가 및 등록·허가 양(종) 돈업 관리 지침

농림수산부 고시 제87-56호. 1987. 12. 24 농림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돼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양돈산업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법 제1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돈업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6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 또는 모돈이 각각 500두를 넘거나 종돈업과 양돈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를 넘는 업체의 사육제한에 관한 사항

제2조(신규허가금지 등) ①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이를 금지한다.

- ② 양돈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두수를 초과하여 모돈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허가당시 허가상한인 1,000두를 초과하여 모돈을 사육한 경우에는, 초과모돈 두당 연간 13두의 자돈을 계열농가에 공급하였거나 200kg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당시의 두수 한도까지 모돈사육을 허용한다.

제3조(돼지고기 수출의무량 부과)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수출의무량을 부과한다.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업 등록을 한 자중 종돈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돈업 허가를 받은 자
 -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종돈업과 양돈업을 함께 하는 자중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사육하는 자
- ② 제1항의 수출의무량 부과기준 및 의무이행기간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출 실적 신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의무량이 부과된 자는 수출의무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출 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의무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가. 수출면장 확인
- 수출의무자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별표 1)

수출의무량 부과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구 分	모 돈	종 돈
기 준 두 수	전체 허가 또는 등록두수	전체 종반돈 보유두수
연 간 두 당 분 만 두 수	19두 (9.5두/복×2회전)	16두 (8두/복×2회전)
출 하 두 수	수 출 비 육 돈 종돈등	17두 ○ 종돈 : 4두 ○ 선발잔여돈 : 3두 (육성을 90%)
비 육 돈 두 당 수 출 육 생 산 량	12kg	12kg
모 돈 두 당 수 출 육 생 산 량	200kg	100kg

- 종돈에 대한 수출의무량 적용예외 : 납세증명 등 증빙자료에 의해 종돈으로서의 판매가 확인될 경우 수출실적 확인시 수출의무량에서 종돈으로 판매된 상용물량 감축

- 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면장
- 나. 외화획득용 원료(수출물품) 수매승인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다.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 라. 농장별 규격돈 구매 및 수출물량 확인서(수출업체발행)
- 마. 세금계산서(수출업체 발행)
- 바. 기타 증빙자료

제5조(감축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신고에 따라 수출 실적을 확인하고 수출의무자가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별표에 정한 기준에 상응하는 모든 또는 종돈두수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1월의 기간을 주어 감축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의 납부

(별표 2)

수출의무 이행기간(제3조 제2항 관련)

대 상 자	이 행 기 간
○ 종돈 또는 모돈을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자	○ '88. 3. 1 ~ '89. 2. 28 : 수출의무량의 50%
○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자	○ '89. 3. 1부터는 매년간 수출의무량의 100%
○ 종돈 또는 모돈을 500두 이상,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자	○ '88. 6. 1 ~ '89. 5. 31 : 수출의무량의 50%
○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자	○ '89. 6. 1부터는 매년간 수출의무량의 100%

기한을 주어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한다.

- ③ 초과사육부과금 부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출 미이행에 상응하는 모든 또는 종돈의 감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돈업 허가·등록 및 종돈업 등록을 취소한다.

제6조(분산영위 양돈업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을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모든 또는 종돈 500두 미만의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과 종돈을 합산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무량을 부여한다.

- ② 동일인이 타인의 명의로 영위하는 양돈업 또는 종돈업이 입증되거나 관련법인임이 입증될 수 있는 분상영위 양돈업 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록·허가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조치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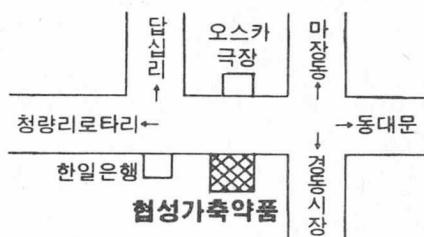
1. 이 지침 시행전에 허가상한인 1,000두를 초과한 모든 두수에 대하여 돼지고기 수출로서 그 초과사육이 허용된 양돈업 영위자에 대하여는 이미 부여된 수출의 무량에 추가하여 허가상한 이내 1,000두 모돈에 대한 수출의무량을 제3조 제2항의 별표에 따라 부여한다.
2. 이 지침 시행전에 허가상한인 1,000두를 초과한 모든

두수에 대하여 농가와의 계열사육으로 그 사육이 허용된 양돈업 영위자에 대하여는 전체두수에 대한 수출의무량을 제3조 제2항의 별표에 따라 부여한다.

3. 이 지침 시행전에 동일인이 분산 영위하는 양돈업 또는 관련법인이 영위하는 양돈업중 허가상한인 모돈 1,000두를 초과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도 위의 각 호를 준용한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 · 동대문구 제기 1동 654
(オスカ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